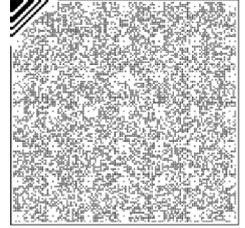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나.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6331호, 2023.12.27.)

2.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대전광역시시장, 울산광역시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배홍철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4. 1. 9.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21 (2024. 1. 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7 팩스번호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